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4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이해식 · 김한규 · 박상혁
채현일 · 양부남 · 박정현
서영석 · 김영진 · 김영배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제18조의4까지”를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나목의”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로 한다.

-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채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아동학대범죄
-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
른 가정폭력범죄

제4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를 “제2조제2호가목·다목
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에 관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
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로 한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1.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u>제18조의4까지</u>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u>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u>	마. ----- ----- ----- ----- ----- ----- <u>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u> ----- ----- ----- ----- ----- <u>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u>

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바. ~ 사. (생략)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생략)

<신설>

바. ~ 사.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

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및 동법 제245조의8 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u>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3)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4) 「<u>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u>장애인복지법</u>」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u>노인복지법</u>」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u>나. (생략)</u> <u>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u>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생략)	<u>다. (현행 나목과 같음)</u> <u>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u>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제2조 제2호가목 · 다목의

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
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
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에 대하여 -----

